#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33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 구자근 · 김선교 · 김석기

박준태 • 신동욱 • 박덕흠

강대식 • 유상범 • 인요한

배준영 • 권영세 • 박형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복권 판매를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공익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유사·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차단이 필요함.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경정법 등 다른 사행산업 관련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유사·불공정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지 아니하여, 복권수탁사업자의 사이트를 모사하거나 정부·공공기관과의 연계, 제휴를 사칭하여 불법 복권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투자금 또는 예치금을 편취하고, 추첨 때마다 독립적으로 결정될 뿐인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수취하는 등 유사·불공정행위로 인해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복권 관련 유사·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여 국가복권사업을 보다 건전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 3, 제3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등).

#### 법률 제 호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복권위원회와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수탁사업자가 시행하는 복권 게임을 대상으로 복권 발매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내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매를 중개 또는 대행하거나 이를 통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2. 최종 구매자에게 이 법에 따른 복권의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거 나 홍보하는 행위

제3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탁사업자가 시행하는 복권 게임을 대상으로 복권 발매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복권의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 거나 홍보한 자
- 2.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

제34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탁사업자가 시행하는 복권 게임을 대상으로 복권 발매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로부터 복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취득한 자
- 3. 제5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국내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매를 중개 또는 대행하거나 이를 통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5조의3(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복권위원회와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수탁사업자가 시행
	하는 복권 게임을 대상으로 복
	권 발매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
	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u>다.</u>
	1. 국내에서 발행되는 복권의
	구매를 중개 또는 대행하거나
	이를 통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
	<u>는 행위</u>
	2. 최종 구매자에게 이 법에 따
	른 복권의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제34조(벌칙) ①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②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1. (생략)

<신 설>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수탁사업자가 시행하는 복권 게임을 대상으로 복권 발매나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이익을 제공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5조의3제2항제2호를 위반 하여 복권의 당첨 예상번호를 제공하거나 홍보한 자
- 2.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공개하거나 제공한 자

3		- – –	 	 	 	 	
-			 	 	 	 	
_	- – –		 	 	 	 	
_	- — —		 	 			

- 1. (현행과 같음)
- 2. 제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수탁사업자가 시행하는 복권게임을 대상으로 복권 발매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자로
	부터 복권이나 이와 유사한
	<u>것을 취득한 자</u>
<u>&lt;신 설&gt;</u>	3. 제5조의3제2항제1호를 위반
	하여 국내에서 발행되는 복권
	의 구매를 중개 또는 대행하
	거나 이를 통하여 당첨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u>2</u> . ~ <u>7</u> . (생 략)	<u>4</u> . ~ <u>9</u> . (현행 제2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